



2018 RETIREMENT PENSION PLAN

2018 유안타증권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 2018 유안타증권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행복한 생각  
유안타증권이 함께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연금저축과 함께 3층 사회보장체계의 하나로서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안타증권의 퇴직연금은 한사람 한사람 모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우편물을 E-mail로 받아보세요

우편통보지를 E-mail로 변경하는 방법

## 1. 온라인에서 변경

### • 개인형IRP

홈페이지([www.myasset.com](http://www.myasset.com)) (뱅킹/계좌/대출)개인정보조회/변경 및 통보지관리)에서 E-mail로 변경

### • DC플랜 가입자

홈페이지([www.myasset.com](http://www.myasset.com)) 에서 E-mail 주소 등록 후 퇴직연금 홈페이지(My퇴직연금)기본정보) 가입자정보조회/변경)에서 우편통보지 E-mail로 변경

## 2. 유선변경 (고객센터☎1588-2600) 및 영업점)

가입자 본인 요청에 의하여 E-mail주소 등록 및 우편통보지 E-mail로 변경 가능

# Contents

## 1. 퇴직연금제도 일반 사항

01. 2018년 개정내용	4
02. 퇴직연금제도 개요	5
03.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7
04. 지연이자	11
05.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12
06.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13
07. 퇴직연금제도를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처리방법	15
08. 수급권의 보호	15
09. 계약이전 절차	16
10. 과세체계	17
11. Q&A	22

## 2. 노후설계 및 투자관련 사항

01.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	25
02. 노후설계의 중요성	25
03. 노후보장 체계	26
04. 노후자금 상세설계	26
05. 투자의 기본원칙	27
06.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29
07. 2018 Market Outlook	31

## 01 2018년 개정내용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세법 §55①)

#### 〈개정이유〉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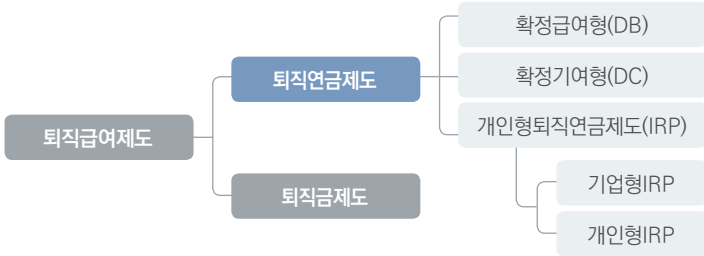
현행		개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율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확대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좌동)
1,200만원~4,600만원	15%	1,200만원~4,600만원	
4,600만원~8,800만원	24%	4,600만원~8,800만원	
8,800만원~1억5천만원	35%	8,800만원~1억5천만원	
1억5천만원~5억원	38%	1억5천만원~3억원	
5억원 초과	40%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2%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02 퇴직연금제도 개요

### 퇴직급여 제도의 구성

2005.12.0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에 퇴직연금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됩니다.



### 퇴직연금 제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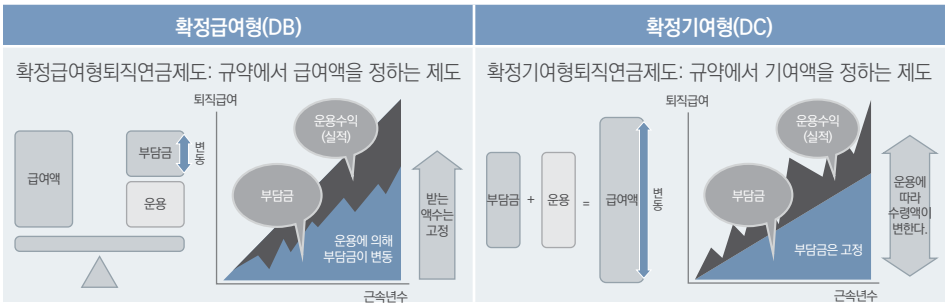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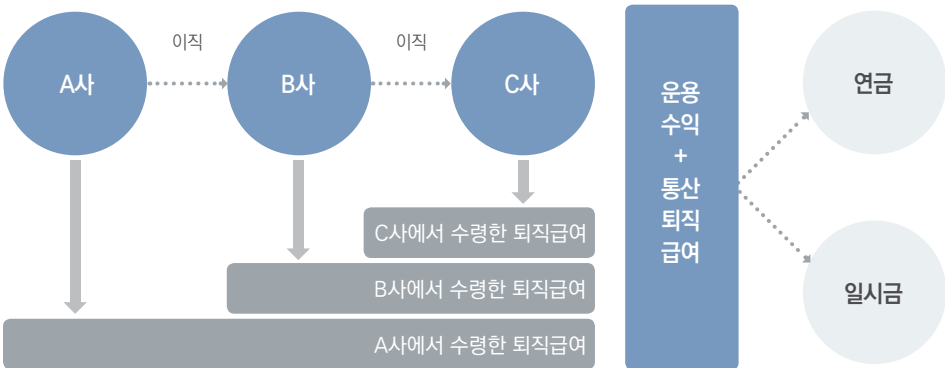
## |02 퇴직연금제도 개요

### 제도별 특징

<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입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으로 확정된 제도</li> <li>사용자는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퇴직 시 가입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만큼의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li> </ul>
<b>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li> <li>사용자는 금융기관에 근로자 개별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 시 가입자는 부담금 및 자기 책임하에 운용한 손익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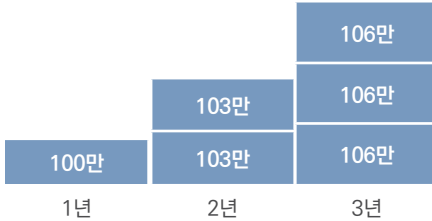
<b>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형: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또는 요구에 따라 규약신고 없이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특례제도</li> <li>개인형: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입금하거나, 개인부담금을 적립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은퇴시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는 제도</li> </ul>
---------------------------------	---



### 03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연봉 1,200만원(월100만원)에 입사 후 3년간 근무 후 퇴직 시  
(매년 임금상승률 3%, 수익률 3% 가정)

[DB형]



퇴직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  
= 106만(임금상승분 포함) × 3 = 318만원  
임금상승률에 따라 퇴직급여 달라짐

[DC형]



(100만+3만)+(103만+6만)+106만  
= 309만원 + 9만원(투자수익금) = 318만원  
운용성가에 따라 퇴직급여 달라짐

#### 제도별 비교

구분	DB	DC	IRP	
			기업형	개인형
사용자부담금	법정 최소적립비율 이상 (2018년 80%)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사용자부담금 ± 운용손익		-
적립금 운용주체 및 수익귀속	사용자(기업)	가입자(근로자)		
중도인출	불가	가능(법정 사유 限)		
가입자부담금	불가	가능(연금계좌 합산하여 연1800만원限)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연금	55세 이상 & 연금지급기간 5년 이상		
	일시금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 03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급여를 노후의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중도인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 사유에 한하여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중도인출	불가능	적립금의 100%
담보제공	적립금의 50%	적립금의 50%

※당사 : 현재 담보제공 가능 상품 없음

### 중도인출 · 담보대출의 법정 사유 및 제출서류

####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무주택자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 확인 서약서</li> <li>•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li> <li>•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li> <li>• 재산세 (미)과세증명서</li> </ul>	당사양식  세목별과세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li> <li>•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영수증 사본</li> <li>•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li> </ul>	등기 전 신청 시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시

####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한 사업장 근로 동안 1회)
-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해당

구분	구비서류	비고
무주택자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 확인 서약서</li> <li>•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li> <li>•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li> <li>• 재산세 (미)과세증명서</li> </ul>	당사양식  세목별과세증명서
전세금/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li> <li>•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영수증 사본</li> <li>•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li> </ul>	잔금지급 전 신청시  잔금지급 후 신청시



## 03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b>요양필요 여부 확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ul>	병명, 요양기간 (6개월 이상) 확인 요양이 종료된 경우
<b>부양가족<sup>주1)</sup> 여부 확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ul>	

주1) 부양가족의 범위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을 의미합니다. 단,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의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④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b>파산 여부 확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파산선고문</li> <li>신청 당시 파산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하며, 면책·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신청불가</li> </ul>	

## 03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⑤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5년 이내의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신청당시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을 할 수 있는 서류</li> <li>-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li> </ul>	

⑥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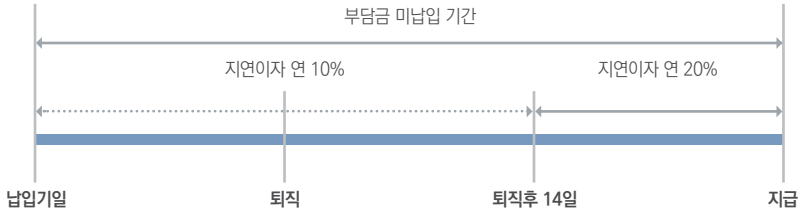
구분	구비서류	비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물적 피해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령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li> <li>*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16호 서식</li> <li>**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지 제1호서식</li> </ul>	발급처 : 시·군·구청 또는 읍·면장 피해정도가 50% 이상이어야 함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적 피해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령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li> <li>•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li> <li>• 사망·실종 증명서 또는 실종·사망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li> </ul>	
배우자, 부양가족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여부 확인 있는 서류</li> </ul>	

## 04 지연이자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가입자의 운용수익 손실을 보전하고 적기 납입을 유도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이 강화되었습니다. (확정급여형(DB) 제외)

### 지연이자율

- 부담금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가입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 → 연 10%
- 상기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 납입일까지 → 연 20%



###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일 경우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밖에 상기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05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 임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어떠한 급여금산출에 기초가 되는 단위 개념입니다.

#### [평균임금 계산식]

$$\text{평균임금} = \frac{\text{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주1)}}{\text{3개월 동안의 총 일수* 주2)}}$$

\* 주1) 임금총액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지급받아야 될 금액으로  
세액 공제전의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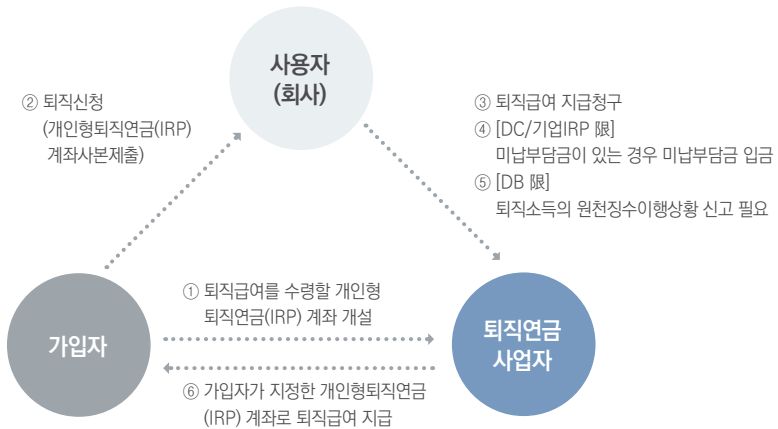
\* 주2) 총 일수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을 역으로  
소급하여 계산한 기간의 일수

## 06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 IRP 의무이전 예외사유 : ① 만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 수령 시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 퇴직급여 지급절차



### 1.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개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의무 이전되어야 하므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를 개설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IRP)

-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는 퇴직 전용 계좌
-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의무이전
- 소득자라면 누구나 계좌 개설 가능 (연금저축 포함 연1,800만원까지 개인부담금 납입 가능)
- 개인부담금 연 700만원(연금저축 포함)까지 세액공제 혜택

## 06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 2. [퇴직의사 전달]

가입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사본과 함께 퇴직의사를 회사에 전달합니다.

### 3. [퇴직급여 지급청구]

사용자(회사)는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에 가입자의 퇴직사실을 알리고, 퇴직급여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퇴직급여 지급청구서(당사 양식),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사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DB 限), 임원퇴직급여한도금액확인서(DC/기업형IRP, 임원 퇴직의 경우 限)

### 4. [(DC/기업IRP 限) 미납부담금 납입]

가입자(퇴직예정자)의 퇴직연금에 불입하지 못한 미납부담금이 있는 경우 납입이 필요합니다. 가입자의 퇴직연금에 불입된 사업주부담금+운용손익이 퇴직급여가 되며, 퇴직연금사업자가 과세이연 신고 및 원천징수 된 세금을 납부합니다.

### 5. [(DB 限) 퇴직소득세신고]

퇴직급여의 지급일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퇴직소득금액과 퇴직소득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퇴직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인출이 발생할 때 퇴직연금사업자가 납부하므로, 사용자(회사)는 별도의 납부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 퇴직연금제도별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의 지급시 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소득자 별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확정급여형(DB)	사용자(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금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과세이연(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이연신고)</li> <li>• 연금계좌가 아닌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li> </ul>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연금사업자 (금융기관)	

## |06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 6. 퇴직급여 지급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시 관련 세금을 차감 후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당사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가입자가 당사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퇴직급여 이전시 가입자가 원할 경우 현재 운용중인 자산의 매각 없이 그대로 현물이전이 가능합니다.

## |07 퇴직연금제도를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처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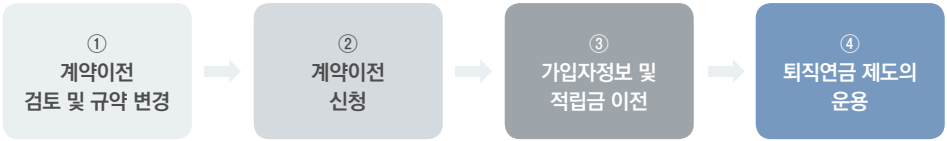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합니다.

<p>제도의 중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가 일시적 재정 압박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li> <li>•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취소 이후 타 사업자에게 이전되기까지 근로자의 부담금 납부, 급여 지급, 적립금 운용, 운용현황 통지, 가입자 교육 등은 계속 수행해야 함</li> </ul>
<p>제도의 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사 합의로 폐지/제도변경에 따라 기존제도 폐지</li> <li>• 노동부에 퇴직연금규약(DB/DC) 폐지신고</li> <li>• 적립금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li> <li>•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li> </ul>

## |08 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담보대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09 계약이전절차



### ① 계약이전 검토 및 규약변경

규약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② 계약이전 신청

새로운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과 각각 계약을 체결 후 이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 이전을 요청합니다.

### ③ 가입자 정보 및 적립금 이전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에는 가입자 정보가,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에는 적립금이 이전되도록 해야 합니다.

### ④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새로운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 10 과세체계

### 퇴직소득세 계산구조(2016년 이후 퇴직하는 경우 적용)

퇴직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적용되던 정률공제(40%)가 퇴직소득 수준별 차등공제 (100%~35%)로 전환되어, 고액 퇴직자에게 유리했던 퇴직소득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단, 갑작스러운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2016년~2019년까지 4년간 점진적으로 적용합니다.



# 10 과세체계

참고: 종전 퇴직소득세 계산구조(2015년말까지 퇴직하는 경우 적용)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① 정률공제 : 퇴직소득금액 × 40%

②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 20년 이하	48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2012.12.31 이전 근무분

퇴직소득과세표준 ÷ 근속연수

(=) 연평균과세표준 × 소득세율

(=) 연평균산출세액 × 근속연수

(=) 산출세액

2013.01.01. 이후 근무분

퇴직소득과세표준 × 5 ÷ 근속연수

(=) 환산과세표준 × 소득세율

(=) 환산산출세액 ÷ 5 × 근속연수

(=) 산출세액

+ (=) 산출세액

(=) 최종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퇴직소득차감납부세액

연평균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 지방소득세 별도

## 10 과세체계

### 연금/일시금 수령시 과세체계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연금수령조건의 미충족 또는 일시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이연퇴직소득이 포함된 퇴직연금에서 연금수령시 가입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금/일시금 수령시 소득의 원천과 수령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됩니다.

소득의 원천 \ 수령형태	연금 수령 (연금수령한도 <sup>주1)</sup> 이내)	일시금 수령 (연금수령한도 <sup>주1)</sup> 초과)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과세제외	과세제외
이연퇴직소득	연금소득세(분리과세) <sup>주2)</sup> • 이연퇴직소득세의 70% 수준	이연퇴직소득세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연금소득세(종합과세) <sup>주3)</sup> • 70세 미만: 5.5% • 70세 ~ 80세미만: 4.4% • 80세 이상: 3.3%	기타소득세 16.5%
운용손익		

※ 상기 세율은 지방세 포함 세율입니다.

### [연금/일시금 수령시 과세체계 흐름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인출은 연금소득세 적용

1. 퇴직연금제도 일반 사항

# 10 과세체계

주1) 연금수령한도란 한 과세기간에 연금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하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text{연금 수령 한도}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연금개시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개시신청일)의 계좌평가액}}{(11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1.2$$

\*연금수령연차 : 최초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차년도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10년차 까지 적용 (단 2013.3.1 이전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6차년도로 하여 연금수령연차를 계산)

주2) 이연퇴직소득을 원천으로 연금 수령시 연금 지급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과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주3) 소득·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및 운용손익을 연금 수령시 연간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이 1,200만원 초과할 경우 소득이 발생한 익년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과세 신고시 연금소득세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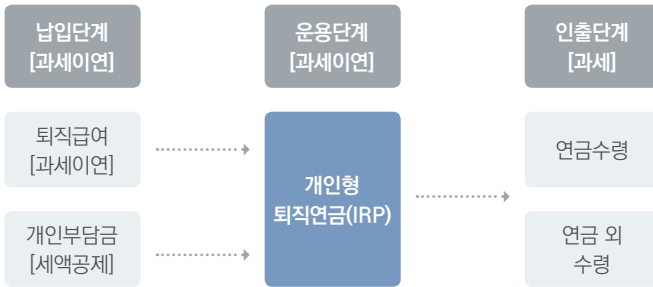
### [연금소득세 계산구조]



## 10 과세체계

###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납입 · 운용시 세제혜택 〉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퇴직급여를 이전할 경우 세전 퇴직급여가 이전되어, 퇴직소득과 운용 손익에 대한 과세가 인출이 발생할 때까지 이연 됩니다.



IRP통장을 개설하여 재직 중에는  
 “ 추가부담금 불입해서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  
 퇴직시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겠!

### 가입자부담금 납입 시 관련 세제

확정급여형(DB)을 제외한 퇴직연금제도에는 사용자부담금 외에 가입자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하여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납입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C/기업형IRP/개인형IRP: 연 1,800만원(연금저축계좌와 합산)</li> <li>• 전금융권 합산 납입한도이며, 한도 설정 후 가입자 부담금 납입</li> </ul>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액공제한도: 연 700만원(연금저축 합산)</li> <li>•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가입자부담금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세액공제</li> <li>※ 고액연봉자(1억2천만원 초과)는 연금저축의 경우 최대 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퇴직연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능</li> </ul>

# 11 Q&A

## Q. 확정급여형(DB) 제도를 운영시 사용자(회사)는 어느 정도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나요?

A. 사용자(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최소적립금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 할 수 있도록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금<sup>주1)</sup>은 기준책임준비금에 법정 최소적립비율 (2018년: 80%, 2019~2020년: 90%, 2021년 이후: 100%)을 곱하여 계산하며, 최소적립금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재정검증” 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재정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6개월 이내에 사용자(회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재정건전성 검증결과가 적립부족일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근로자에게 서면 등에 의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주1) • 최소적립금 = Max(계속기준 책임준비금, 비계속기준 책임준비금) x 법정 최소적립비율

- 계속기준 책임준비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급여지급을 위하여 수리적으로 계산한 금액(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방식인 예측 단위 적립방식으로 산정)
- 비계속기준 책임준비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급여지급을 위하여 계산한 퇴직급여 추계액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산정, 가입기간에 급여수준을 곱하여 산출한 가입자별 예상급여를 합하는 방식으로 산정)

### • 법정 최소적립비율

사업연도	2012.7.26~2013	2014~2015	2016~2018	2019~2020	2021~
법정 최소적립비율	60%	70%	80%	90%	100%

※ 과거근무기간을 소급하여 도입한 경우 퇴직연금 가입연차에 따라 위의 법정최소적립비율보다 작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1 Q&A

### Q. 재정검증 결과가 적립부족 일 경우, 사용자(회사)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A. 재정검증결과 사용자(회사)의 보유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할 경우 적립금 부족을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부족금액에 대한 자금조달방안, 납입계획 등을 포함하는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작성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재정안정화계획서의 작성대상이나, 작성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을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호]

### Q. 재정건전성 검증결과 적립초과 일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재정검증결과 사용자(회사)의 보유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50%를 초과하고 초과분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적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검증결과	조치사항
기준책임준비금×150% < 보유적립금	사용자의 적립금 반환 요구시 반환가능
기준책임준비금×100% < 보유적립금 ≤ 기준책임준비금×150%	초과분은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가능

### Q. 임원도 퇴직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나요?

A. 가입자란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 때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이나,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구체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한편, **임원은 의무적인 퇴직연금 적용대상이 아니나, 사업장 별로 자율적으로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할 수 있습니다.**

### Q. 한번 설정한 퇴직급여 제도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한번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경우라도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 시 절차가 복잡하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 제도 선택 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 11 Q&A

### Q. 퇴직연금 제도 도입 후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나요?

A.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운용방법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 Q.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나요?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 또는 복수 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서 퇴직금 제도와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실시하여 근로자 별로 그 특성에 맞는 퇴직급여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러 개의 퇴직급여 제도 설정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Q. 퇴직연금의 재원은 안전하게 관리되나요?

A. 퇴직연금 재원의 운용에 있어 안정적이고, 업무처리 능력이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된 금융기관에서만 해당 업무를 취급하도록 하며, 적립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사업주와 계약 체결 시 근로자를 수익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신탁계약과 보험계약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은 실질적, 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 Q. 직장을 옮겨도 퇴직금은 계속 적립할 수 있나요?

A.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12.7.26 이후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의무 이전되어, 근로자의 직장 이동시에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 Q. 퇴직연금 급여는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요?

A. **근로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Q. 연금으로 받을 경우 어떤 이익이 있나요?

A. 연금으로 수령 시,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부담해야 할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부담합니다.** 즉, 퇴직소득세율이 5%이면 연금소득세율은 3.5%(5%의 70%)입니다. 이는 퇴직금 원금에 대한 세금이고, 발생된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는 기간에는 연령에 따른 연금소득세(만 69세까지 5.5%, 만 79세까지 4.4%, 이후 3.3%)를 부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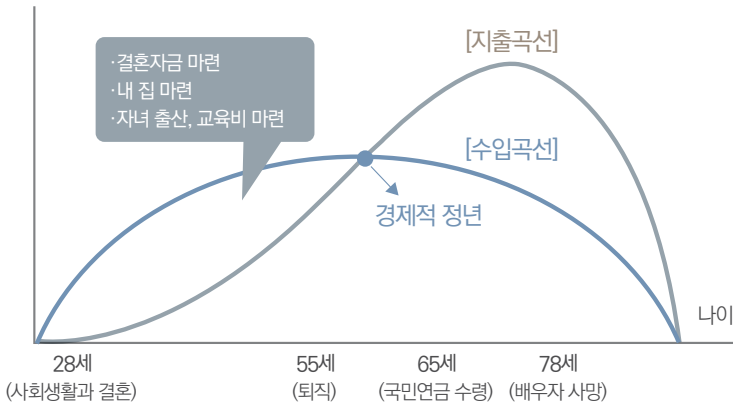


## |01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

일생 동안의 수입과 지출은 생애 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에 맞춘 재무설계가 필요합니다.

[예시]

구분	30대	40대	50대	60대
생애주기	결혼기	자녀교육기	가족성숙기	노후생활기
자산관리 이슈	결혼/주택마련 자금	교육투자 자금	자녀결혼 및 은퇴자금	상속 및 의료자금
자산관리 계획	대출설계	보험설계	은퇴설계	상속설계
투자목적	자산축적	자산축적	자산관리	자산관리 및 소비
안전자산 : 위험자산	30 : 70	30 : 70	50 : 50	65 : 35
대표적 투자성향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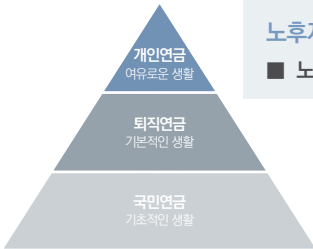


## |02 노후설계의 중요성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기대수명이 2010년 81세에서 2023년 91세로 이미 100세 시대에 도래하였고 이에 따라 은퇴기간 역시 20년에서 40년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은퇴 준비를 위한 노후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03 노후보장 체계

경제적 정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는 노후생활비는 국민연금은 물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과 개인의 저축, 보험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노후자금 산출방법**

■ 노후자금 = 은퇴 직전 소득 X 소득대체율(60~80%) X 노후기간(20~30년)

[선진국형의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추진]

### 04 노후자금 상세설계

#### 노후자금 상세 설계

##### [STEP 1] 퇴직 후 필요한 자금과 수입원 확인하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득대체율 설정 및 국민연금, 개인연금 수령 예상금액을 함께 고려하여 퇴직 후 필요자금을 계산합니다.

##### [STEP 2] 물가상승을 고려한 미래가치 계산하기

지금까지 계산한 퇴직 후 필요자금은 현재가치입니다. 돈의 가치는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퇴직시점에 필요한 돈은 물가상승분 만큼의 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 [STEP 3] 노후기간 동안 필요한 자금규모 구하기

지금까지 퇴직 첫 해에 필요한 생활비가 구해졌다면, 이제는 노후 전 기간 동안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노후 기간 동안 필요한 금액은 퇴직 후 사망까지 노후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퇴직 후 노후자금을 얼마의 수익률로 운용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STEP 4] 가지고 있는 자금 확인, 추가로 필요한 돈 계산하기

3단계까지의 과정을 거쳐 필요한 총 노후자금이 계산되었습니다. 이제는 본인이 얼마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와 수익금이 지나면서 불어날 것이고, 은퇴시점 받게 되는 퇴직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105 투자의 기본원칙

### ■ 분산투자

주식, 채권, 펀드 등 투자의 수단은 상당히 다양할 뿐만 아니라 투자 수단별로 각각의 특징이 다르고, 장단점이 다르며, 고유의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연관성이 적은 투자수단을 적절히 혼합하여 그 매입 시기를 달리하는 분산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산의 분산

하나의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가격변동이 다른 여러 개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자산인 예금이나 채권에만 투자하는 것이 주식 투자를 포함하는 것보다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은 서로 수익률이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 채권시장이 안 좋을 경우 주식시장이 이를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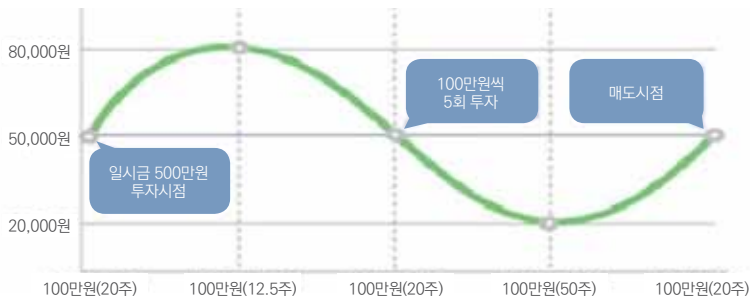
#### 시기의 분산

퇴직연금제도는 부담금이 정기적으로 납입되는 적립식 투자입니다. 적립식 투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일정금액을 투자하는 형태로 “Cost Average Effect(평균매입단가 하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Cost Average Effect(평균매입단가 하락 효과)란?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매입하여 투자 타이밍을 분산시킴으로써 낮은 가격에서 많이, 높은 가격에서 적게 매입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거치식으로 매입한 경우에 비해 적립식 매입방법의 평균매입단가가 더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예시] 500만원 일시금 VS 정액분할 투자 비교



구분	투입금액	매입주수	환급금	수익률
일시금	500만원	100주	500만원	0.0%
적립식(정액분할)	100만원X5회	122.5주	613만원	22.6%

## 105 투자의 기본원칙

### ■ 원칙과 목적을 갖춘 투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와 원칙이 중요한 것처럼 투자에 있어서도 목표와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도한 욕심이나 보상심리로 인하여 투자에 실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투자목적은 분명히 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원칙을 정하여 투자를 진행하도록 해야합니다.

### ■ 타이밍보다 준비가 먼저

주변에서 소위 대박이라고 불리는 투자기회가 생긴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여 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의 경제 흐름과 투자흐름을 종합하여 봤을 때 그 후에도 좋은 기회들이 계속해서 생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차를 타 투자에 실패하기보다는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3가지 투자원칙을 알아보았습니다. 투자에 있어 원칙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과 투자위험을 대하는 성향에 맞게 투자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지 않는 투자는 실패의 지름길이며 투자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 역시 성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투자수단이 있는 만큼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상황과 성향에 맞게 투자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 106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 운용방법

퇴직연금 가입시 매달(또는 매년) 적립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운용하여 수익을 늘릴 수가 있을까요?  
먼저 그 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약정기간 동안 투자하면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받는 원리금보장운용방법

둘째,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실적배당형 운용방법

셋째, 첫째와 둘째 운용방법을 제외한 실적배당형 운용방법

저위험 저수익	운용방법	상품종류	비고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금, 적금</li> <li>• 최저이자율을 보증하는 보험계약(GIC)</li> <li>• 환매조건부매수계약(RP)</li> <li>•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등</li> </ul>	자산관리계약을 특정금전신탁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동 자산 관리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분산요건을 갖춘 RP제외)에는 투자불가
	분산투자 등 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형 펀드, 채권혼합형 펀드</li> <li>• 환위험 헤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외국의 국채</li> <li>• 투자자격 주택저당증권, 학자금대출증권 등</li> </ul>	
	그 외 (위험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혼합형, 주식형 펀드</li> <li>• 상장주식(DC/개인형IRP 불가)</li> <li>• 투자자격등급의 회사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투자금지증권은 운용불가</li> <li>• 적립금의 70% 한도 내에서 운용</li> </ul>
고위험 고수익			

## |06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 운용방법 변경

만기도래, 투자성향 변경,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상품운용방법을 변경하실 수 있으며, 운용 방법 변경에는 아래의 두 가지가 있으므로 구분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운용상품 변경: 기존 보유상품을 매도하여 그 매도자금으로 새로운 상품을 매수하는 방법
- 투자비율 변경: 기존 보유상품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향후 납입할 금액(부담금)에 대한 투자비율을 변경하는 방법

### 위험자산 총 투자한도

퇴직연금 적립금은 노후 생활을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자산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 및 퇴직연금 감독규정에서는 위험자산에 대하여 투자가능한도를 부여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70%
-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

## |07 2018 Market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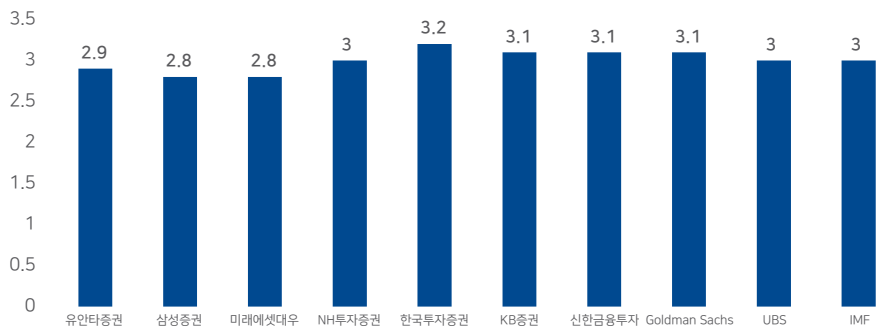
### 2018 한눈에 보는 투자 Consensus

[출처: 유안타증권 종합자산관리자료 「WM Guide+」 2018년 1월호]

## 국내 GDP 성장률

# 3.0%

### 기관별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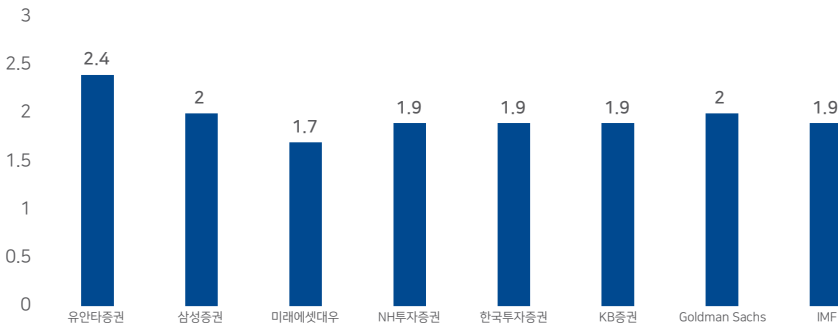
- 본 자료는 각 해당 증권사의 연간 전망 리포트를 참고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입니다.
-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07 2018 Market Outlook

### 소비자물가 상승률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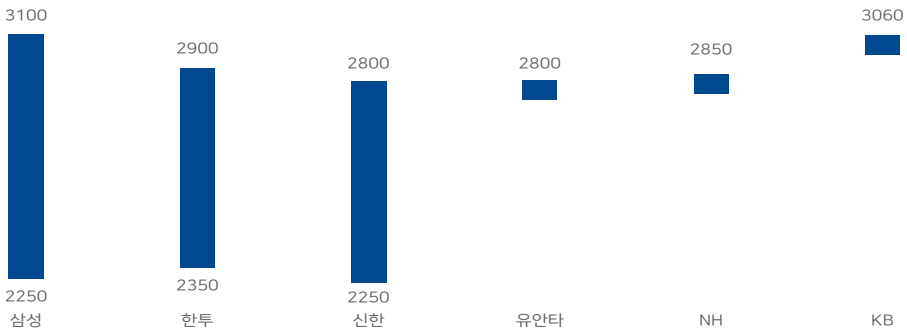
### 기관별전망 (%)



### KOSPI TP(Band,pt)

# 2,250~3,100<sup>pt</sup>

### 기관별전망 (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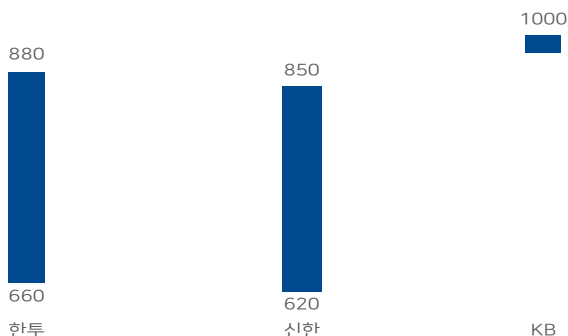


# 07 2018 Market Outlook

KOSDAQ TP(Band,pt)

# 620~1,000<sup>pt</sup>

기관별전망 (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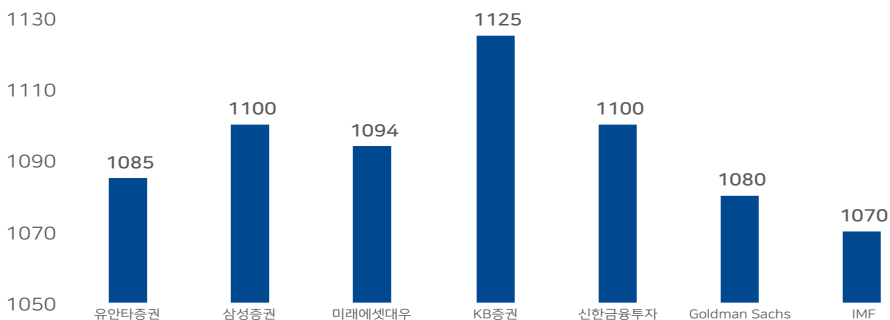
KB

미래: 예상밴드 제시 중단

원/달러 환율(연 평균)

# 1,094<sup>원</sup>

기관별전망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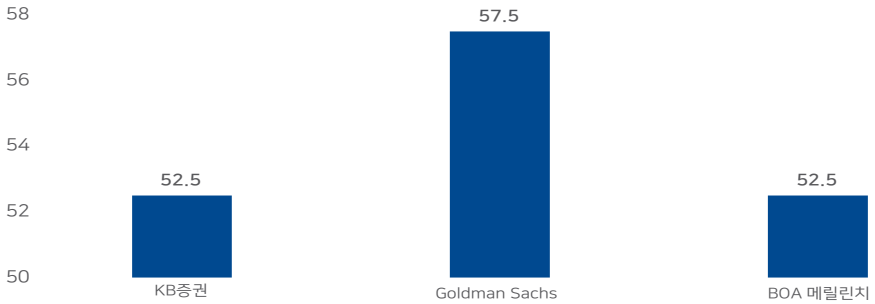


## |07 2018 Market Outlook

### WTI유가(연 평균)

54.1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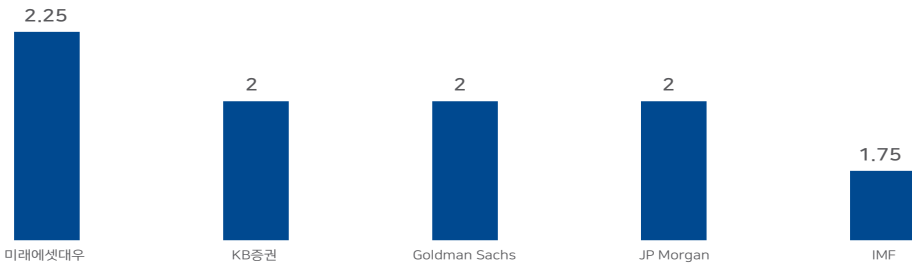
### 기관별전망 (원)



### 美 기준금리(연말)

2.0%

### 기관별전망 (%)



# 유안타 대표PB 100인에게 듣는 2018 금융시장 전망

[출처: 유안타증권 종합자산관리자료 「WM Guide+」 2018년 1월호]

2018년을 맞아 영업현장에서 느끼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View를 도출해보고자, 당사 대표PB 100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함.

- 본 자료는 당사 대표PB 100인의 의견으로 당사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입니다.
-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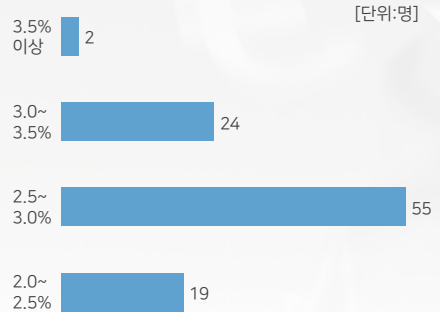
## 거시경제전망

2018년 우리나라 GDP성장률 전망에 대한 설문결과 2.5~3.0% 55명, 3.0~3.5% 24명, 3.5%이상 2명으로 100명 중 81명이 2.5%이상으로 예상함. 2017년 GDP성장률 3%이상 이 확실히 되는 가운데 응답자의 70%이상 이 내년에도 양호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함. 이는 국내외 공식기관의 예상치(한국은행 3%내외, OECD 3.0%, IMF 3.0%), 외국계IB 예상치(골드만삭스 3.1%, 바클레이즈 3.1%, 메릴린치 3.0%)가 모두 3%이상 전망하는 것 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전망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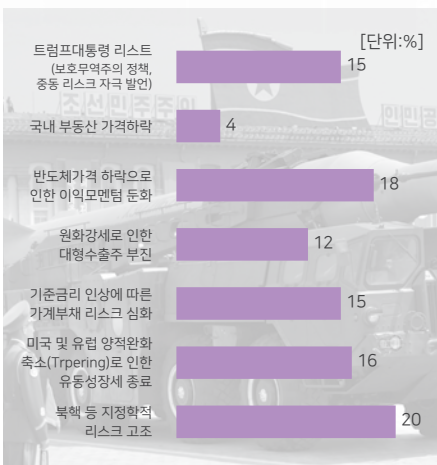
### 국내 GDP 성장률

# 2.5~3.0%

#### 국내 GDP성장률 전망



#### 2018년 국내 주식시장의 위험요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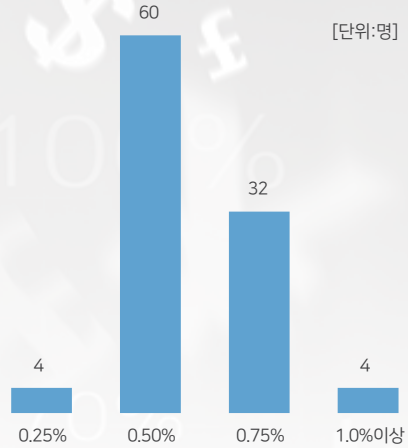
2018 국내주식시장의 가장 큰 위험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가 20%로 가장 높게 나왔고, '반도체가격하락으로 인한 이익모멘텀 둔화' 18%, '미국 및 유럽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유동성장세 종료' 16%로 그 뒤를 이음. 최근 북한의 계속된 핵도발과 트럼프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고조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음. 글로벌경기회복과 4차산업혁명의 수혜를 입어 올 한해 사상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고점우려가 그 뒤를 이었음.

# |07 2018 Market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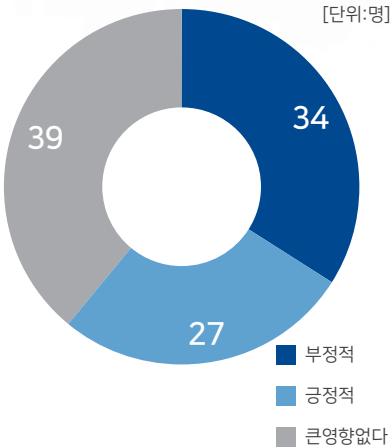
## 미 정책금리 인상폭 0.50~0.75%

2018년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설문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0.5~0.75% 수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함. 연준은 지난 12월 14일 금리인상을 발표, 2017년 총 3번의 인상을 단행하였지만, 예상된 인상이었기에 시장이 반응은 담담했음. 이제 시장의 관심은 2018년 금리인상 속도이며, 같은 날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2018년 3차례 금리인상 전망을 유지하였고 이는 응답자의 2~3차례 인상 예상과 비슷한 수준임.

2018 미국 정책금리 인상 수준은?



### 미국의 금리인상이 국내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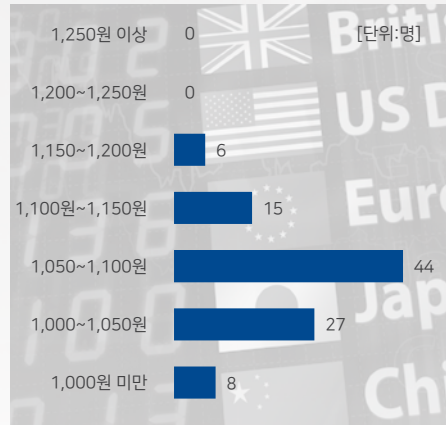
연준(FRB)의 금리인상이 국내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는 응답자 중 39명이 '큰 영향없다', 34명이 '부정적'이라고 답함. 경기회복에 기인한 예상된 금리인상시기에 시장에 충격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금이탈로 인한 국내증시의 충격을 우려하는 의견이 비슷한 비중이었음.

## |07 2018 Market Outlook

# 2018 원달러환율 1,050~1,100 won

2018년 원/달러환율 전망은 응답자의 44명이 '1,050~1,100원'구간을 예상했으며 1,000원미만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8명뿐임. 국내증권사 및 해외IB 대다수의 전망치 1,060~1,100원 구간인 것과 큰 차이가 없음. 2017년 원/달러환율 Band가 1,075~1211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018년에는 달러대비 원화 강세가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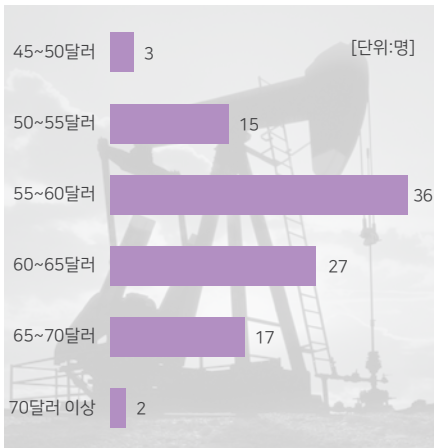
2018 원/달러 환율전망



## 2018년 국제유가(WTI)

# 55~65 \$

2018년 국제유가(WTI)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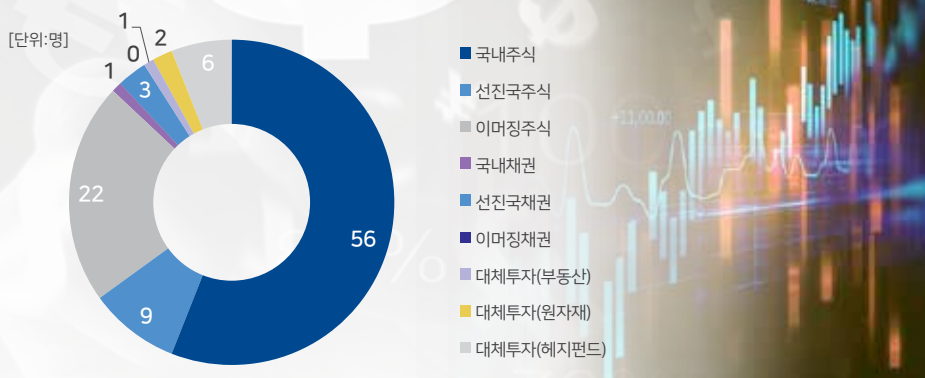


2018년 WTI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명이 '55~60달러', 27명이 '60~65달러'를 예상하는 등 대다수의 직원이 2017년 가격 Band였던 42~59달러보다 한 층 높은 전망을 제시하였다. 작년 11월 30일 열린 OPEC 총회에서 감산기간연장 합의, 글로벌경기확장에 따른 수요 증가, 중동지역을 둘러싼 정정불안 등이 WTI가격 Band에 대한 전망을 상향시킨 것으로 보임.

##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

### 최 선호 국내주식, 다음은 아시아 이머징 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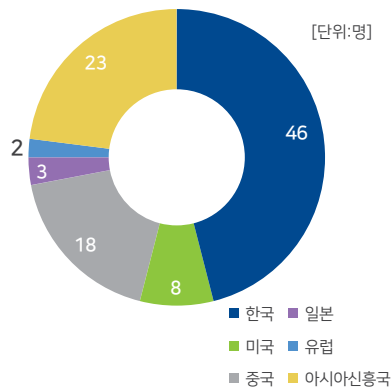
2018년도 가장 유명한 자산군은?



2018년 가장 유명한 자산군으로 56명이 국내주식을, 22명이 이머징 주식을 택해 선진국 주식(9명)보다는 이머징 주식시장에 대한 강세를 예측함. 채권형 자산을 선택한 직원은 4명뿐으로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채권 보다는 주식을 선택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를 보임.

2018년 가장 유망하게 생각하는 주식시장으로는 응답자 중 46명이 한국, 18명이 중국, 23명이 아시아 신흥국을 선택할 만큼 선진국 보다는 이머징 시장의 강세를 예측하는 응답이 많았음. 작년 설문조사에서 동일한 질문에 44명이 미국을 선택했던 것에 비하면 시장을 바라보는 view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음.

2018년 가장 유망한 주식 시장은?



## 07 2018 Market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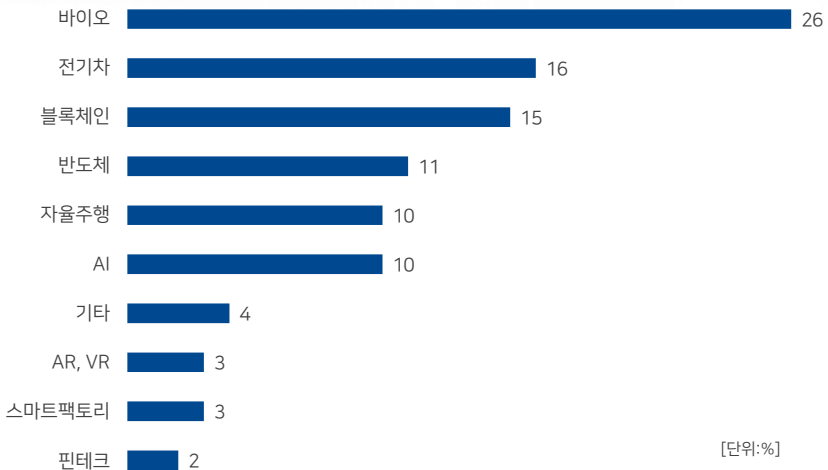
### 국내시장 전망

## 2018년 주목하는 국내 주식시장 투자 Keyword는? 바이오

2018년 주목하는 국내 주식시장 투자 Keyword에 대한 질문(최대 2개 선택)에는 응답자의 26%이 '바이오'를 선택, 지난해 하반기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바이오섹터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음. 그외 전기차(16%), 블록체인(15명%), AI(10%), 자율주행(10%) 등 4차산업을 대표하는 섹터/기술에 주목하는 모습이었으며 지난 2년간 주도섹터였던 반도체(11%)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음. 기타의견으로는 '5G', '중국내수소비' 등이 있었음.



### 2018년 주목하는 국내 주식시장 투자 Keyword는?



[단위:%]



# |07 2018 Market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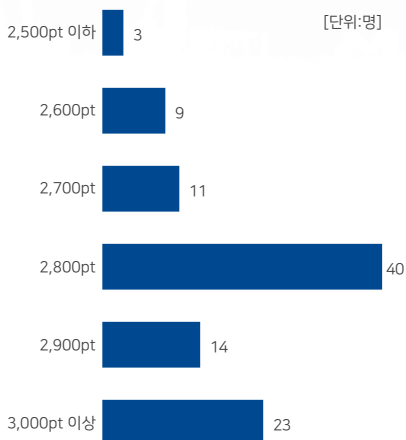
## 국내시장 전망

KOSPI **2,800** pt, KOSDAQ **900** 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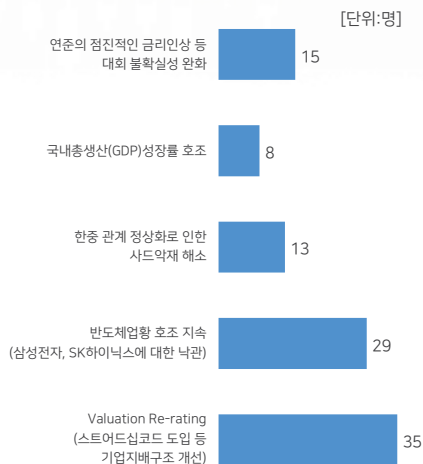
2018년 KOSPI 지수고점을 묻는 질문에는 2,800pt라는 대답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0pt이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도 23명이나 될 만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장밸리가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음. 강세의 배경으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인한 KOSPI 시장의 Valution 재평가,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시총상위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내년에도 유효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음.



### 2018년 KOSPI지수 고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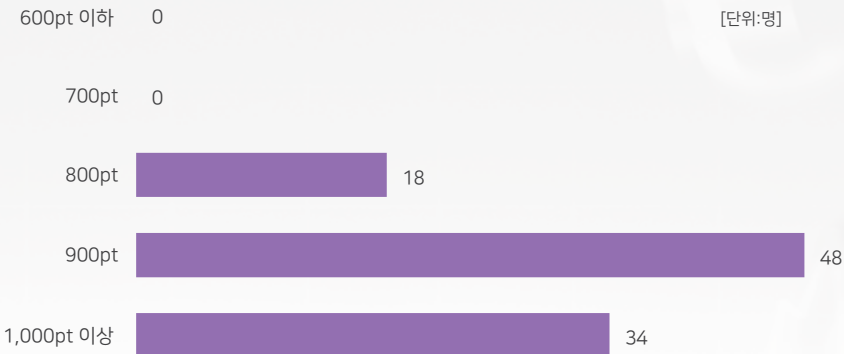
### 2018년 KOSPI 강세요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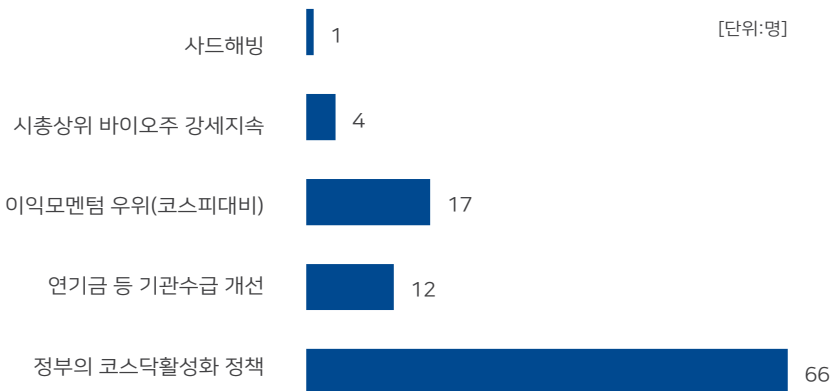
## | 07 2018 Market Outlook

2018년 KOSDAQ지수 고점에 대한 전망은 가장 많은 48명이 900pt를 예상했고, 1,000pt이상을 예상하는 직원도 35명이나 될 정도 KOSDAQ시장 강세에 대한 확신이 KOSPI보다도 높았음. 그리고 그러한 확신의 배경에는 정부의 코스닥활성화 정책(66명)에 대한 기대감이 앞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

### 2018년 KOSDAQ 지수 고점은?



### 2018년 KOSDAQ 강세요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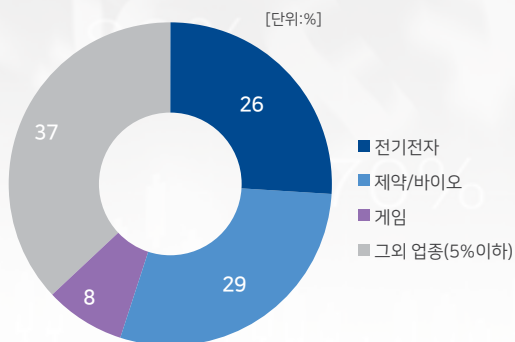
## |07 2018 Market Outlook

### 국내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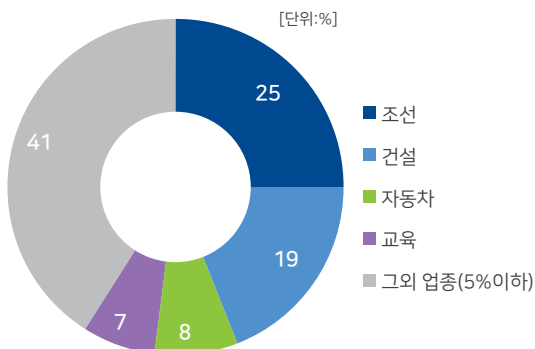
#### 2018년 국내주식시장 유망/비선호 업종은?

2018년 국내 주식시장 유망업종으로는 제약/바이오(29%), 전기전자(26%)를, 비선호업종으로는 조선 (25%), 건설(19%)를 선택하였음. 제약/바이오는 신약개발 및 글로벌시장 진출 기대감, 전기전자는 반도체 업종의 호실적 지속 및 밸류에이션 저평가해소가 선호 이유였고, 조선은 수주절벽으로 인한 실적부진, 건설은 건설경기 둔화가 비선호의 주된 이유였음.

#### 2018년 국내 주식시장 유망업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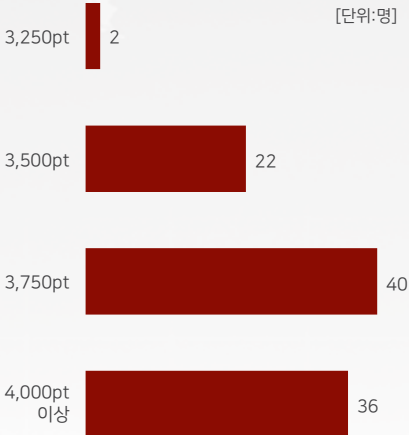
#### 2018년 국내 주식시장 비선호업종은?



## |07 2018 Market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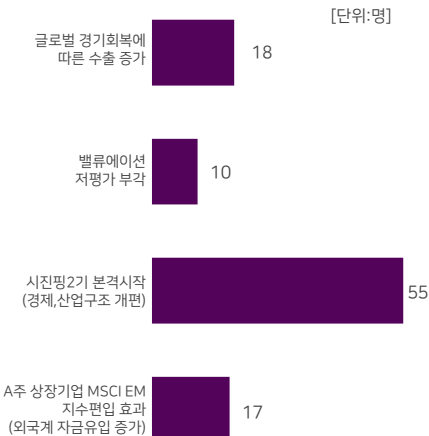
### 중국시장 전망

#### 2018년 상해종합지수 고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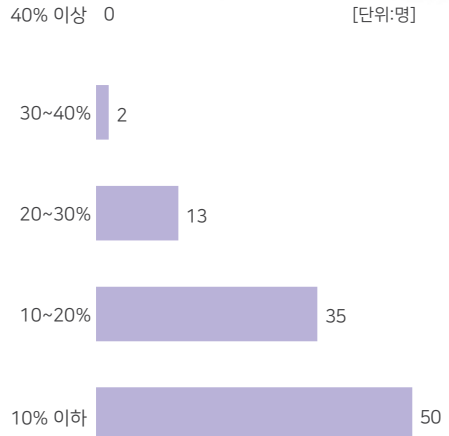


2018 상해종합지수 고점을 묻는 질문에는 40명이 3,750pt, 36명이 4,000pt이상이라고 답하며 2017년 고점이었던 3,450pt 대비 10~20%정도 상승여력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지만, 작년 동일한 설문에 응답자의 70% 이상이 4,000pt이상을 예상했던 것에 비하면 기대감은 많이 낮아진 상황임. 상승 배경으로는 시진핑 2기 2년차에 따른 경제/산업 구조 개편기 대감을 꼽은 응답자가 55명으로 가장 많았음. 응답자의 절반인 50명이 중국주식형자산의 포트폴리오내 편입을 10%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말해, 중국주식형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2018년 상해종합지수 상승요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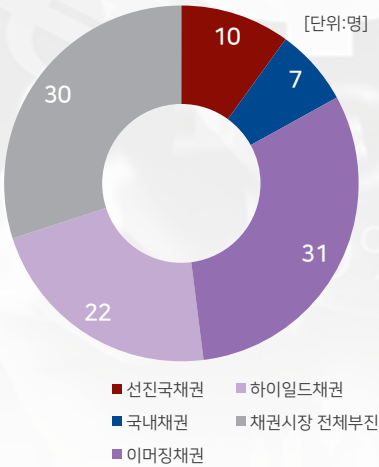
#### 2018년 포트폴리오 내 중국주식 편입비중은?



# |07 2018 Market Outlook

## 채권 및 대안투자 시장 전망 최선호 이머징 채권

2018년 가장 유망한 채권자산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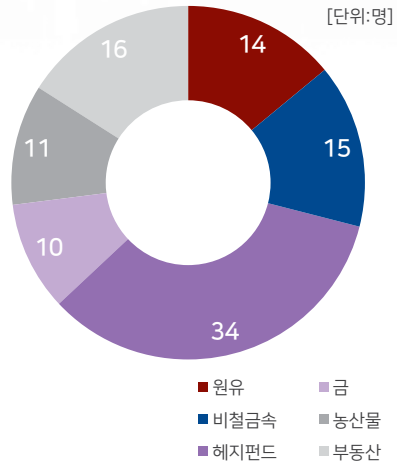
2018년 유망 채권자산에 대한 설문결과 이머징(31명), 하이일드(22명) 채권 순이었지만, 채권시장 전체를 부진하게 전망하는 의견도 30명이 되어, 올해 본격적인 금리인상에 따른 채권시장 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음을 알 수 있음.

대체투자 자산군에 대한 선호도는 34명이 헤지펀드를 꼽았으며, 그외 자산들은 10~15%수준으로 비슷한 비중을 보였음. 올해 헤지펀드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만큼, 직원들의 관심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임.

### ※ 참고

한국형헤지펀드 11월말 기준 설정액 12조 4,472 억원으로 전년동월 6조 7,097억원대비 약100% 성장, 운용사 105개

2018년도 가장 유망한 대체투자 자산군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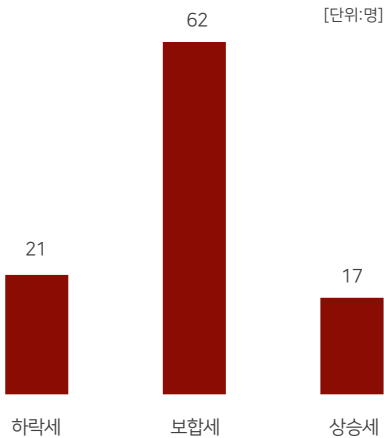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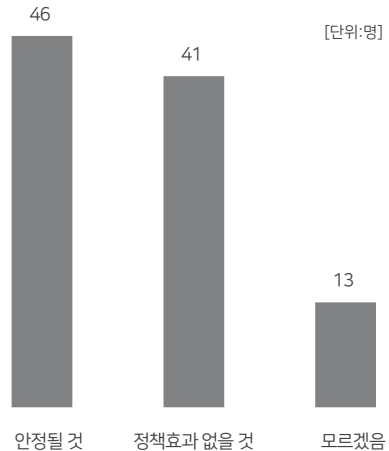
## 부동산시장 전망

2018년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62명이 '보합세'를 전망하였고, '상승세'를 예상한 것은 17명 뿐이었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서도 41명이 '효과가 없을 것', 46명이 '안정될 것'이라고 답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소 우세하였지만 60%이상이 보합세를 전망한 것을 감안하면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2018년 국내 부동산시장 전망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까?















www.myasset.com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76 유안타증권 PB지원팀

고객지원센터 : 1588-2600

FAX : 02) 3770-5549

E-mail : pension@yuantakorea.com

본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유안타증권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교육과 관련한 사내게시용 서면자료입니다.

